

|                                                                                                                                                            |                                                         |
|------------------------------------------------------------------------------------------------------------------------------------------------------------|---------------------------------------------------------|
|  <b>지식경제부</b> <b>보도자료</b><br><small>Ministry of Knowledge Economy</small> | <a href="http://www.mke.go.kr">http://www.mke.go.kr</a> |
| <b>2011년 4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                                                         |
| 문의 : 안전품질정책과 권규섭 과장(02-509-7238), 이원식 연구관(7239)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기반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4.1일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
  -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11.2.5일에 시행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며, 금년 2~3월중에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불법·불량 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금년이 1차 종합계획(2011~2013, 3개년)임**
- 이번 1차 계획에서는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업종별 협회, 민간 모니터링 요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품안전관리로의 전환**
  - 국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품안전 위해요소 분석을 위한 DB 구축 및 소비자에게 신속한 위해정보 알림을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안전정보망을 구축**

- 제품사고 조사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과학적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실질적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 등 **제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

- 다자·양자간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 참가하고 안전취약 수입품에 대한 감시를 위해 관세청·조달청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협력강화 및 수입품관리 내실화를 추진**

□ 기술표준원은 금번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이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한편,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국내외 제품리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첨부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11-2013) 요약본

<첨부>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

### < 요약 본 >

2011. 3.



기술표준원

### □ 주요 선진국의 제품안전정책

#### ○ 풍 압

- 자율안전관리의 심화·확산과 제품안전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강화
- 유통·사용단계에서 시장감시 활동 강화 및 이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사고조사/후속조치 등 체계 정비
- 사업자·소비자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품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위해제품 유통차단·선제적 관리를 위해 수입제품 관련 정보공유, 제품안전교육프로그램, 전문가 교류확대 등 국가간 공조 확대(미·중국, EU-중국 등)

#### ○ 국가별

- ◆ (미국) 모든 제품안전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을 관리하며,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 (일본) 정부기관간 위해(사고)정보수집/분석/조사 체계 정비를 통해 사후 관리에 집중 및 사업자·소비자의 자발적인 제품안전확보 유도책 확대
- ◆ (EU) 기업들의 자발적인 제품안전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EU 차원의 사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배포하고 있으며, 수입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간 제품안전 공조 강화
- ◆ (영국) 중앙·지방 정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제품안전 사후관리 활동 수행 및 수입품에 대한 감시 강화
- ◆ (독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유도하며, 위해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제품안전성 검사 등 시장감시·감독 활동 강화

## □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책목표

정책 목표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

### 정책 방향 (SLOGAN)

|                                  |                                  |                                 |                                |
|----------------------------------|----------------------------------|---------------------------------|--------------------------------|
| 1 사업자, 소비자의<br>자발적 제품안전<br>관리 참여 | 2 안전한 제품유통<br>을 위한 정보 및<br>협력 확대 | 3 제품안전 사고<br>재발방지를 위한<br>시스템 확립 | 4 글로벌 협력<br>강화 및 수입품<br>관리 내실화 |
|----------------------------------|----------------------------------|---------------------------------|--------------------------------|

### 17개 핵심추진과제

|                                    |                             |                                    |                                |
|------------------------------------|-----------------------------|------------------------------------|--------------------------------|
| 1-1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br>자율 점검 체제 구축    | 2-1 유통업자와 제품안전 협력<br>채널 구축  | 3-1 제품사고 조사 프로세스<br>확립             | 4-1 다자, 양자간 글로벌 협력<br>내실화      |
| 1-2 제품안전정책 지역 순회<br>컨설팅, 설명회 개최    | 2-2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br>강화      | 3-2 리콜 수행을 위한 제품<br>구매자 정보제공 합법화   | 4-2 다수입국 대상 국내<br>제품안전정책 홍보 강화 |
| 1-3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br>위한 포상제도 확대     | 2-3 제품안전정보 DB 구축 및<br>활용    | 3-3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br>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운영 | 4-3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감시<br>활동 강화     |
| 1-4 자발적인 리콜을 위한<br>가이드라인 배포        | 2-4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br>컨텐츠 구축  | 3-4 실질적 사후관리가 가능한<br>전담조직으로 확대     |                                |
| 1-5 사업자의 자발적 제품<br>안전 연구, 개발 노력 유도 | 2-5 제품안전 정보 알람의<br>Tool로 활용 |                                    |                                |

## □ 제품안전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 (4개 정책 및 17개 과제)

### [1] 사업자 및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를 유도

#### [1]-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자율점검 체제 구축

- ◆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단체, 시험·인증기관 참여를 통한 안전성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에 대한 감시에는 현실적인 한계
- ◆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후감시 활동체계 마련이 필요

#### - 중간조직을 활용한 자율안전점검체제 구축

·업종별 협회를 안전성조사, 사고조사 등에도 참여케 하여 제품 안전 활동에 대한 주요 참여자로서의 인식 전환 추진

\* (예) 문구협회, 완구협동조합, 타이어협회 등

·자율안전감시활동 관련 기준 마련 등 용역 사업을 통해 업종별 협회에 활동예산을 지원하여 회원사를 안전감시활동 주체로 하는 방안 도출

\* 불법, 불량제품 생산업체 → (신고)업종별협회+제품안전협회 → (보고)기술표준원

·또한 각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정책 정보, 홍보 메일링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제공

·자율안전감시 활동 참여가 우수한 협회에는 'Safety Guard' 마크 부여 및 포상

## - 상시 'Safety Guardian' 제도 도입

- 불법제품 유통에 대한 안전성조사 민간 감시단으로서, 상시 Safety Guardian 제도를 도입
- 기존 모니터링요원(약 150여명) 외에 일반 소비자, 초등학교별 어머니회로 구성된 Safety Mom 등을 Safety Guardian으로 모집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안전점검 참여자 pool을 다양하게 구성
- 일정 건 이상 불법제품신고 가디언은 포인트에 따라 포상제를 실시
- 제품안전의 날 행사, 지역별 제품안전 순회 설명회, 제품안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격려 및 참여 유도
- 同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제품 정보는 인증대상품목 관리 등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의 핵심 소스로 활용

## [1]-② 제품안전정책 지역순회 컨설팅·설명회 개최

- ◆ 안전한 제품이 생산·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제품 안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아야 함
- ◆ (일본) 매주 화요일을 '제품안전 점검의날' 세미나일로 정하여, 제조·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 (영국) 제품안전 검사자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제품안전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단위로 중소 제조기업, 중소·영세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Top-Down 형태의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Q&A 방식의 컨설팅, 사업자들의 애로 청취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
- 월 1회, 1주 단위로, 신규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 부터 우선 개최
- 향후 중앙 조직을 통한 방식에서 보다 확대하여, 지역별·업종별 중간조직을 활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1]-③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 ◆ 사업자·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인식개선, 중간조직,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안전 감시활동 유도, 홍보 강화 등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에 대해 제품안전 활동 우수자 표창제도 도입이 필요
- ◆ **(일본)**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향상 및 기업의 제품안전활동 촉진을 위해 제품안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제품안전대책우량기업'으로 표창제도를 '07년부터 운영
  - \* '제조·수입업자부문/소매판매업자부문' 2개 분야(대/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전한 제품 제조·판매하기 위한 대처/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처/리콜발생시 대처/제품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대처' 4개영역으로 구분

·안전한 제품개발 및 이의 보급을 통해 제품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외에 포상 분야·부문 확대를 통해 '(가칭)제품안전대상'으로 포상제도 개편

·제품안전 자율감시활동 우수 가디언, 제품안전 R&D 우수기업, 제품안전문화확산 기여자 등으로 포상 분야 확대 [(현행) 포상분야 분류없이 유공자/기업 훈·포장 수여 → (계획) 포상분야 분류 수여]

·제조업자, 유통업자, 가디언을 대상으로 각 부문에 대해 포상

·연속 수상을 통해 수상에 대한 명예의식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상패 수여 등)

### [1]-④ 제품 위해성 확인시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발적 제품수거(리콜)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기업들이 실제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 리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 **(일본)** 제품사고발생시 제조업자들의 자발적인 리콜 권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교육
- ◆ **(유럽)** EU차원에서 제조·유통업자들에게 제품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후속조치에 대한 가이드북 제정 및 이행 권고

·제조업자·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리콜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제조업자) 리콜정보 공표, 실제 수행방법 등 구체적인 리콜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 (유통업자) 제조업자의 리콜 수행시 매장내 정보 공표 등 협조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온·오프라인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여, 협·단체 등 중간조직, 지자체, 제품안전 유관기관에 오프라인 무료 배포·온라인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

\* 기업의 스스로 안전성 확인을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12년부터 시행) 지침도 마련, 보급

## [1]-⑤ 사업자의 자발적 제품안전 연구·개발 노력 유도

- ◆ 어린이·고령자·서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취약기술 개발을 통해 어린이보호 및 서민 생활안전 확보하고
- ◆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손실 방지를 위한 제품안전 선진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제품안전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
- ◆ **(일본)**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소발화, 인간특성, 고분자 파괴, 생체장해, 전기용품안전 등의 기술적 데이터를 기업과 공동개발, 제공

·어린이·노약자·저소득층 등 취약 분야 안전 위해요인 해소 및 기업공동 활용 가능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품안전 취약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연구능력 제고 및 개발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 중심의 컨소시엄 연구개발 필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품분야별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품안전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개발을 지원

·확보된 제품안전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조성 등 제품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 인프라를 강화

## [2]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정보 및 협력 확대

### [2]-① 유통업자와의 제품안전정보 협력채널 구축

- ◆ 현재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험·인증기관, 관세청, 지자체로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에 대한 제품안전 관련 정보 수집 등 협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나 실시간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음
- ◆ **(일본)** 유통업체로부터 거래처 기업의 제품사고정보, 당해 기업에 등록된 고객 클레임, 고장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사고의 리스크 정보 추출 등을 통해 제품사고 미연 방지 대책에 활용
- ◆ **(미국)** '소매상신고모델' 등을 운용. 월마트는 자체 핫라인, 지점 매니저, 소비자통신원, 제품환불 등을 통해 제품사고정보, 불만정보 등을 수집하여 1주일에 1회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보고
  - \* 정보소스, 보고일자, 소비자정보, 생산자정보, 상해여부, 사고 일로부터 2년간 판매량, 재고량 등 (사망사고는 24시간 이내 보고)

·국내 유통업체 중 A/S를 수행하여, 제품 사고정보 등 고객 접점에 있는 기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제품안전의날을 통해 포상받은 기업, 업종별 협회를 매개체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협력체계 구축

\*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대형 유통업체 등

\* 제품사고정보 수집, 제품안전의 대응체제 강화 협력, 기업 자체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 제품안전 계몽활동 등을 수행

·우리 원은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사고정보, A/S를 통한 제품위해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정리 후 DB화하여 안전성 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당해 유통업체는 우리 원으로부터 받은 리콜정보, 수집된 제품사고 정보 제공, 제품사용 또는 제품안전 관련 발간 자료를 소비자에게 배포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미지 구축 가능



## [2]-②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 강화

- ◆ 현재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 활동이 공정위 방침에 따라 하나의 채널로 통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합 관리
  - \* '10년부터 10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 업무가 공정위 방침에 따라 소비자원 포함 모두 '1372'로 통합되어 운영
  - \*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상담 건수당 2,200원을 받으며, 10개 소비자단체에서 연간 52만여건의 소비자 상담사례 접수
  - \* 일반 소비자단체는 수집된 소비자 상담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
- ◆ 식약청은 안전에 있어 제품보다 국민들이 즉각적·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위험의 정도가 큰 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와의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결 모색
  - \*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연단위 위해정보 수집·분석 용역을 발주, 10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관할 품목의 위해 정보를 월단위로 획득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산품·전기용품 분야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보고서 용역을 발주

\* 식약청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위해정보 수집체계 구축

·우리 원에는 월단위로 보고서를 제공하며, 위해정보 동향 등을 파악을 위해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대한 월간 회의 개최

## [2]-③ 제품안전정보 DB 구축 및 활용

- ◆ 인증 관리 및 안전성조사 품목 선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의 부적합 정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해 정보, 제품사고정보 등 제품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성 있음
- ◆ (미국) NEISS(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수집된 제품사고정보, 분석결과 정보를 DB화하여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 ◆ (일본)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제품사고정보를 DB화,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73년부터 제품사고조사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제품사고조사 기법 및 DB 보유를 통해 리스크 분석을 수행
- ◆ (유럽) EU내 각 국별로 제품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자 및 각국에 권고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전기제품안전협회 등 제품안전 유관단체·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제품 위해 정보, 소비자의 위해도 신고사항 및 안전성조사(시판품조사 포함) 결과 등 제품 위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 인증품목 변화관리 및 안전성조사 대상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인증품목 변화관리 등의 피드백체계로 관리

·국가적 차원의 제품사고 리스크 분석·평가를 위하여 동 DB를 활용하여 1년 단위로 제품안전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수행

\* 전문가 구성을 통한 리스크 평가 기법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개발된 평가기법의 수정, 성과분석을 통해 제조업자들도 각 기업별로 제품안전 리스크를 제품출시 전 단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

## [2]-④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콘텐츠 구축

- ◆ 현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은 안전인증검색, 사후관리, 법령마당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소비자 참여 촉진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법제품 신고센터 등의 활성화는 다소 미흡
- ◆ **(미국)** CPSC의 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제품안전 관련 정보·자료 열람, 안전사고 및 불만접수, 위해성 제품 신고,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참여형 정보망으로 활성화
  - \* NEISS(전자위해감시시스템), 기업의 위해공산품보고제도, 소비자상담, 자체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
- ◆ **(유럽)** EU의 RAPEX(소비자안전긴급정보시스템)는 EU 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총 30개국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정보에 대한 신속정보시스템을 운영
  - \* 위해제품 발생시 관련 정보를 각 국의 RAPEX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파

·유통 단계에서 불법제품 및 위해정보 신고시 즉각 회신·답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제품안전협회가 언론보도, 소비자신고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 미국의 CPSC는 SNS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행조직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 즉각적인 조치(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코너를 메인에 배치하고, 원스톱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링크 구축하고 이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 코너 신설로 점차 확대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사고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도 실시

## [2]-⑤ 제품안전정보의 알림 Tool로 활용

- ◆ 현행의 제품안전인증 정보 제공 위주의 Safetykorea를 보다 적극적인 제품안전정책 알림의 채널로 활용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

·제품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제품 설계·제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R&D·생산 인력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도 콘텐츠로 제공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영상 자료, 웹북 형태의 자료 등으로 가독성 높게 구성하여, 다운·배포 가능토록 제공

·인증품목 변화관리를 통해 위해성이 높아져 규제가 강화된 제품 및 안전성조사(시판품조사)결과 위해정보가 발견된 제품, 위해성이 증가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Urgent Alarm'(가칭) 시행

\* 상기 위해성이 상향된 제품에 대한 경보 개념의 서비스로 소비자의 인식 및 주의 환기 목적에서 추진(트위터, SMS, 메신저 등)

[Urgent Alarm 종류(예시)]

| 구 분             | 대 상                                                        | 비 고                                            |
|-----------------|------------------------------------------------------------|------------------------------------------------|
| Urgent Alarm I  | ·자율안전확인품목에서 안전인증품목으로 상향 조정시<br>·신제품 및 기존제품이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진입시 | ·핫코너 마련을 통해 메인 화면에 별도 배치                       |
| Urgent Alarm II | ·안전성조사(시판품 조사)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대국민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보도자료, 안전성조사(시판품조사), 리콜정보 게시판과 링크 되는 구조로 구현 |



### [3]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

#### [3]-① 제품사고 조사 프로세스 확립

-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제품사고조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설립 등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나, 조사 프로세스 구체화가 필요
- ◆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한 “중대”제품사고정보 공표제도와 NITE에 의한 “비중대”제품사고정보 수집제도를 운영
  - (경제산업성) 중대제품사고 발생시 정보수집 → 공표 →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 공표(→ 후속조치)
  - (NITE,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비중대제품사고 발생시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NITE에 보고하도록 권장 → 수집된 사고상황 정리 및 웹사이트 공표 → 특정 사고는 사고조사 수행 → 사고조사결과 공표(→후속조치)

·(사고인지)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위해성 증가품목, 소비자 신고품목 등을 자체 수집하거나, 제조업체, 유통, 판매업자 신고 정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인지

·(사고조사) 사고인지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원이 주도하고 사고 발생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고조사센터에서 조사를 수행

\* 사고조사 대상 범위는 공산품·전기용품으로 하되,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생활제품을 모두 포함

·(자문위원회) 필요시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

·(결과조치)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리콜권고, 리콜명령, 대외공표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실시

\* 관세청, 조달청 등에 중대결함 제품의 국내 반입 금지, 조달 중단 등의 협조를 요청

·(공표) 대상 제품의 Lot번호, 사고내용·원인 등을 언론, 우리 원 정보망 및 Urgent Alarm등을 통해 공표

·(종결) 리콜의 효율적 조치상황을 체크하고 관리(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 접수)

#### [3]-② 원활한 리콜 수행을 위한 제품구매자 정보 제공 합법화

- ◆ 통상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유통업체에서 갖고 있어 제조업체는 자발 또는 강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신문 등 언론에 광고하여 리콜을 수행
- ◆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통해 제한된 목적 하에서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구매자 정보를 제조업체가 활용할 수 없어 리콜수행의 애로가 예상
- ◆ (일본) 제조업자의 리콜 수행시 판매업자가 보유한 고객리스트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
  - \* 위해방지명령 및 리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유통업체에서 보유한 구매자 정보를, 리콜목적에서 리콜 수행 기업이 유통업체에 요청하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구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 개정요구를 소관 부처에 하거나 제품안전기본법 내 명문화 개정을 추진

### [3]-③ 제품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운영

- ◆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危害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고원인 규명은 미흡하며,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危害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원인규명 조사가 필요
- ◆ (선진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동일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전담조직에 의한 사고조사제도를 운영

·제품사고의 경위·원인을 과학적·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사고조사센터로 지정·운영하되 가소제 등 유해물질 분야별, 공산품·전기용품 품목별로 분석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시험·연구기관을 활용

\* 화재사고·감전사고·유해물질 확산 사고 등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별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운영

·사고조사경험·분석능력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필요시 안전인증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하고 사고유형·제품분야 별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되 KOLAS 지정을 받은 비영리 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지정

※ 사고조사센터 지정(案/例) : 기계/물리적 사고(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화재/감전사고(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 [3]-④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담조직으로 확대

-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에 따라 수행하는 제품결함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업무는 조사, 시험, 평가 등 복합적 업무이고,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사고조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현행 정규직 2명(팀장 1명, 연구사 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함에 따라 년차적으로 조직 확대 및 인원 충원이 필요
  - \* (미국) CPSC 7개부서 530여명(조사전담부서 42명), (일본) NITE 4개부서 400여명(조사전담부서 35명)

·사고조사, 시험, 평가 등 사고조사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고,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제품사고조사단’으로 조직 확대 추진

\* 제품사고조사단을 2개팀의 과단위로 운영하고, 분야별 평가요원을 별도 채용

[제품사고조사단 구성(案)]



#### [4]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수입품 관리 내실화

##### [4]-① 다자·양자간 글로벌 협력 내실화

- ◆ 세계각국은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ICPHSO, ICPSC, ISO/COPOLCO 등)를 결성, 리콜표준화·인증기준 부합화·글로벌 리콜정보 공유, 제조자 이력추적제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 ISO/COPOLCO(국제소비자정책위원회),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안기구), ICPSC(국제소비자제품안전규제담당공무원회의)
- ◆ 미·EU 등은 수입제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多교역국가, 불량 제품 다수 발견 국가와 MoU 체결을 통해 협력활동 강화
  - \* (미국) CPSC는 25개국\*과 제품안전 MoU를 체결하여, 제품위해정보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 중국내 CPSC 북경사무소 설치, 중국내 공무원에 대한 미국 제품안전정책 교육 및 미국 파견 근무 등의 제품안전관리 추진

·ISO/COPOLCO, ICPHSO, ICPSC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 \* ICPHSO 국제회의의 서울 개최(일자 : 10.31~11.1, 2일간, 30여개국 300여명 예정)

·OECD가 추진중인 글로벌 리콜 정보 공유시스템과 국내 제품 안전정보망을 연동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 OECD는 글로벌 리콜 DB 웹 구축 추진 중이며 사고제품의 위해요소 등 관련정보를 소비자, 외국 정부(제조자)에 실시간 제공 예정

·국제기구(ICPSC, 국제소비자제품안전 정부협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조자 이력 추적제'에 참여

- \* 한 국가에서 제품이 리콜되면 그 제품의 판매이력을 추적해 다른 국가에서도 리콜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리콜협력 시스템(시범품목 : 유모차)

·중국, 동남아 등 多수입국, 불량제품 다수 발견국가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제품안전 협력체계 구축

##### [4]-② 다수입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정책 홍보 강화

- ◆ 다양한 신종 제품 및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교역 자유화로 인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외국계 안전인증 기업의 수가 국내기업을 추월
  - \*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약 60% 이상이 중국, 동남아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며,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총 19,500여건 중 67%가 외국산 제품이고 이중 83%가 중국산 제품(2009 기술표준백서)
- ◆ 안전성 조사 결과 수입제품 중 적지 않은 수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 '08년도에 실시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107건의 불법제품 중 80건이 수입품(2009 기술표준백서)
- ◆ (미국) 소비자 제품의 디자인에서 제조과정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물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핸드북을, 중국어 번역본으로 제작·배포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 저가제품이 다수 수입되는 국가, 안전성 조사 결과 불법제품이 다수 발견되는 국가의 언어로, 제품안전정책 교육·홍보자료를 번역하여 수입업자에게 배포

- \* 제품안전인증제도 등 제품안전정책·제도에 대해서 당해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 자료를 작성

·당해국 정부기관, 당해국 협회 등 중간조직, KOTRA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 주한 대사관 등을 활용하여 同자료를 배포

- \* 제품안전 MoU체결시 양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품안전정책 안내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

#### [4]-③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 ◆ 저가로 수입되는 제품 증가와 함께 위해도가 높은 불법·불량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
- ◆ 선진국들은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저가 수입제품이 증가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중국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 ◆ (미국) 중국내 제품안전센터를 개소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CPSC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협력하여 주요 수출입 항만에서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 ◆ (유럽) EU는 제품안전시스템 RAPEX와 중국 AQSIQ(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간 협약을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 및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를 RAPEX와 공유하도록 시스템 구성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산 제품이 주로 수입되는 인천, 부산 세관 등에 우리원 직원 또는 중간조직의 직원을 시범 파견하여 통관 절차 시 불법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미국, EU 등에서 추진한 對중국 수입품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나, 대외 협력의 애로를 감안시 국내에서 수입품 감시 강화가 보다 합리적임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아 전 세관으로 확대하거나 동일 세관에 파견 되는 직원수를 늘리는 형태로 확대 추진

·또한 조달청과의 협력(MoU)을 통해 조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합동 점검 추진

끝.